비밀유지계약서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아토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 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u>생산장비 2차배관 공사</u> (이하 "목적 사업"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갑"/"을")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고 비밀정보를 수령하는데 있어서 양 당사자를 대표 또 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갑: 최지성

(인)

을 : 문 상 영

(91)

제 3 조 (비밀 정보)

-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정보, 경영 정보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 ② "정보제공자"("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정보수령자"("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제출, 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인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에 의하여그것이 "비밀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유형적인 형태 이외의 구두, 영상에 의한 방법 또는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을 관찰하거나 조사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비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당시 "정보수령자"에게 그것이 "비밀정보"임을 고지

하고, 고지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 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19 = 1

-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정보수령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관련 임직원(이하 "관련 임직원"이라 한다)으로서 본 계약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비밀유지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한 인원 외에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약서"를 제출한 "관련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정보제공자"와 제3자 간에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자신의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 여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동종 업계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도를 최소한으로 한다.
- ④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제공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계약 기간)

-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u>1년</u> 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u>3년</u> 간(이하 "비밀유지기간"이라 한다) 유효하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비밀유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 6 조 (비밀정보의 표시)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비밀보호의무는 제3조에 규정한 비밀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비밀정보에 한하여 적용된다.

- 1. 비밀정보 제공당시 "대외비" 등의 표시로 비밀정보임을 표시한 것
- 2. 비밀정보 제공당시 비밀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 비밀로서 취급되어지고 제공 후 15일 이내에 비밀정보임을 표시하는 문서를 "정보수령자"에게 통지한 것

제 7 조 (법원,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

- ①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정보제공자"가 적시에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보수령자"는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i)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ii)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 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iii)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iv)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자"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밀정보의 제외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흥되는 경우에는 "비밀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
- 2. "정보수령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 3. "정보수령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5. "정보제공자"가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제공한 정보

제 9 조 (보증)

- ①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 ②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10 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457 = +1

- ①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자에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으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②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 제공자"에게 있으며, "정보수령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개량 기타 지적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정보 및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1 조 (비밀정보의 반환)

"정보수령자"는 i)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ii)"정보제 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에게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손해배상)

-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등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정보제 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제 13 조 (구속력)

- ① 본 계약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어 대한 경우에도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현재 또는 장래의 영업비밀, 상표권, 특허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사용권 등의 권리를 "정보수령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확정적인 후속 계약의 체결, 상

품의 판매나 구입, 상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아니하며, 기타 각 당사자가 제3자와 어떠한 거래 또는 계약 관계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양도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다.

제 15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 간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계약 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수원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하여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0.05.12

"갑"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416 대표이사 최 지 성

"을" ("을"이 법인일 경우)

(주) 아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1 시화공단 2다 302 문 상영



이행보증서약서

(주)아토 (이하 "회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회사"가 2010 년05월15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유의 설비 또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자산을 취급하고 있는 바, "본 계약" 이행 과정에서 "회사" 소속 임·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 설비, 시설 또는 자산에 멸실, 훼손, 고장 등이 발생함으로써 삼성전자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위 손해를 모두 배상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대표이사인 <u>문상영</u> (이하 "본인")은 "회사"의 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을 서약하는 바입니다.

2010 년 05 월 12 일

"회사" 상호 <u>(주)아토</u>

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3-1 시화공단 2다 302 대표이사 문 상대

"본인" 성명 <u>문 상 영</u>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67 진삼마을 삼성5차 525동 1301호

주민등록번호<u>570211-1047814</u>

삼성전자 주식회사 귀중